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제정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01조 등).
-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07조 및 제109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현행 근로감독관 조문 정비 관련(안 제13조, 제101조 등)

개정안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에 따라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고 현행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며 노동감독관의 권한·의무 등에 관하여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에 따르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그러므로 동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2월 6일 동 개정안과 같이 회부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안건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임금비용 구분지급 적용범위 확대 관련(안 제44조의4 신설 등)

개정안은 현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사·공단²⁾이 발주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이하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임금비용 구분 지급을 그 외의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그런데,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은 동일한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5백만원과 3백만원으로 달리 규정²⁾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적용의 특례(안 부칙 제3조)³⁾를 두어 개정안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2) 개정안 및 현행 건설근로자법 규정에 따른 과태료 비교

구분	근로기준법 개정안	현행 건설근로자법
임금비용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금비용 구분지급(매월)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 내역 확인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수급인 통보의무 위반		

이 시행되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와 관련된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설근로자법이 아닌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해당 특례는 의무규정은 여전히 건설근로자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제재규정은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의무규정과 제재규정을 분리하여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제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⁴⁾

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세 진)

3) **안 부칙 제3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의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만을 적용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 ③ (생략)